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33호 2014. 7. 7(월)

## 차 례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97호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19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778호 공시송달 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제3조 단서 조항 중 “1개업체”를 “1개 업체”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20일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을 “도로교통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관내 주차대수 40대이상”을 “구 관내 주차대수 40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대이상”을 “40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3대이상이어야”를 “1대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대이상”을 “1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량당”을 “차량 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인소유”를 “타인 소유”로,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6조제7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를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업무처리지침”을 “대행 업무 처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

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시간외”를 “시간 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청기간중”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위반차량”을 “주차위반 차량”으로, “주차단속공무원(시장)”을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을 “(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견인이동처리대장”을 “견인이동 처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필요시에는 사진 촬영등”을 “필요 시에는 사진 촬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9항제4호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0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0항에 따라”로, “사용자등”을 각각 “사용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1항에 따라”로, “제6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을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자등”을 “제11조제10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으로, “소요비용은 조례 제3조”를 “소요비용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중”을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으로,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대행업체 지정취소등)”을 “(대행업체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대행업 지정시”를 “그 밖의 대행업 지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서류등을”을 “서류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2회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견인대행업체관리</u> <u>규정</u></p>	<p><u>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u> <u>관리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인 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 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 (이를 “대행업체”라 한다)의 관 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 통법」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 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 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견인구역) ① 주차위반 차 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구역 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견인구역) ① ----- --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할 -- 인 천광역시 서구(이하 -----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이하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대행업체의 수) 대행업체의 수는 구관내에 1개업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1개업체 이상으 로 할 수 있다.</p>	<p>제3조(견인 대행업체의 수) 견인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수는 구 관내에 1개 업 체로 한다. ----- -----1개 업체-----</p>

제5조(희망업자 모집공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  
 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경  
 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구관내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3. ~ 4.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  
 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  
 는 주차구획 설치(주차1면 2.3  
 mm x 5m 백색으로 설치)

3.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  
 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3대 이상

제5조(희망업자 모집공고) 제4조  
 -----  
 -----  
 -----  
 ----- 20일 이상 -----  
 -----.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구 관내 주차대수 40대 이상  
 -----  
 -----

3. ~ 4.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40대 이상-----  
 -----  
 -----

3. (현행과 같음)

③ -----따라-----  
 -----1대 이상-----

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시  
행시기 2년차까지는 2대이상도  
가능하다.

④ 제1항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 1.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이상
- 2. 견인차 - 차량당 무전기 1대
- 3. (생략)

⑤ 제1항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  
음 각호와 같다.

- 1. 견인차량 - 차량 1대당 운전  
원 1명이상
- 2. (생략)

⑥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  
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  
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⑦ 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  
소로 타인소유의 부지를 임차하  
여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이어야-----  
-----.<삭 제>

④ -----  
--- 각 호-----

- 1. -----1대 이상
- 2. -----차량 당-----
- 3. (현행과 같음)

⑤ -----  
--- 각 호-----

- 1. -----  
----1명 이상
- 2. (현행과 같음)

⑥ -----  
-----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

⑦ -----  
--타인 소유-----  
----- 2년 이상-----  
-----  
--각 호-----

한다.

- 1.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 2. ~ 3. (생략)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 1. 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례 등 준수
-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
- 3. 4. (생략)
-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 외 특별근무 등 구청장 지시 준수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청기간

-----.

- 1.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2.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의 -----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  
----- 제17조제1항에 따라  
-----  
----- 각 호 -----  
-----.

- 1. -----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법 -----
- 2. -----  
대행업무 처리지침 --
- 3. 4. (현행과 같음)
- 5. -----  
----- 10일  
이내 --
- 6. 그 밖의 -----  
시간 외 -----  
-----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  
----- 구역 내 -----  
-----  
----- 제2  
조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중 사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 이동대상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생략)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보관-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  
-----  
-----  
-----.

② ----- 주차위반 차량-----  
- 주차단속 공무원(시장-----  
-----  
-----.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③ 제1항에 따라-----  
-----  
-----.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 ① -----

----- 견인이동 처리대장-----  
-----  
-----  
-----.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당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① (생략)
- ②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 ①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자등에 징수 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중 보관료의 산정

-----  
-----  
----- 사용자 등 -----  
-----  
-----  
-----.

⑫ 제11항에 따라-----  
-----  
----- 제6항 -----  
-----  
-----.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  
-----.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 ① 제11조제10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  
----- 소요비용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  
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  
자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  
하여 반환을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매월 2회 대행업체의 청구  
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1. 2. (생략)

제14조(사업개선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  
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최초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  
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내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체 지정취소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

-----  
----- 사용  
자 등-----  
-----  
-----  
-----.

③ 제1항에 따라-----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제15조(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  
----- 1년 이  
내-----  
-----  
-----.

제16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①  
-----  
----- 각 호의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1. ~ 4. (생략)
- 5. 기타 대행업 지정시 부여한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등)

- ① (생략)
-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의 대행업 지정 시 ---  
-----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17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제1항에 따라---  
-----  
서류 등을 -----  
-----.
- ③ -----  
----- 연 2회  
이상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9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0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422번길 24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7. 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7-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51-1	승학로422번길 24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경서동 374	호두산로 265	2009-08-28	도로 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3	인천 서구 석남동 111-152, 111-157	서달로130번길 9	2009-06-30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석남동 111-154, 111-165	서달로130번길 11	2009-06-30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976-106	옥빛로15번길 3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H2블럭	봉수대로 643	2009-07-01	축곶 봉수지역과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7	인천 서구 가좌동 153-2	가정로88번길 14	2009-08-28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3-1	청마로51번길 20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일원	거월로 61-6	2009-09-22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인천AG경기장(승마장)
10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일원	봉수대로 1137-6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인천AG경기장(수영장)
1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6-1	완정로228번길 12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7. 0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109번길 17외 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7-0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223-266	건지로109번길 17	2014-06-24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검암동 525-5	서곶로 512	2014-06-23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검암동 525-5	허암길 5-7	2014-06-23	건축물 멸실	
4	인천 서구 가좌동 289-1	백범로718번길 34-1	2014-06-20	건축물 멸실	
5	인천 서구 가정동 528-6	율도로 123	2014-06-20	건축물 멸실	
6	인천 서구 가정동 528-6	원창로240번길 41-2	2014-06-20	건축물 멸실	
7	인천 서구 가정동 528-11	원창로240번길 41-1	2014-06-20	건축물 멸실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2	서달로130번길 9	2014-07-04	건축물 멸실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4	서달로130번길 11	2014-07-04	건축물 멸실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97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12.1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58호(2012.08.21.),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 - 63호(2014.04.30.),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된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014. 7. 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시장정비사업
- 나. 명칭 :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 나. 면적 : 3,104.7m<sup>2</sup>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
- 다. 대표자 : 김민순
-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0-38

### 4.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신고처리 : 2014. 7. 1.

### 5. 관리처분계획인가(경미한 변경)의 요지

- 가. 조합원 분양신청 호수변경

단위 :m<sup>2</sup>

구분	기 존			변 경			비고
	구분	호수	분양면적	구분	호수	분양면적	
김희선	상가	303호	250.0328	상가	109호	69.1836	
조병주	상가	304호	250.0328	아파트	1202호	84.5654	전용(59.64)
				아파트	1302호	84.5654	
합계			500.0656			238.3144	

### 6. 관계도서 : 생략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35),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581-4994)에 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778호

##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고기간 : 2014 07. 07. ~ 2014. 07. 22.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진***	인천 서구 가좌동	백범로604번길 *****	2014-05-02	2010-03-25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시.군.구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의 혼란 및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감면제도 개선
-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유도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촉진,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바른 표현 정비 및 법률명 및 행정기구직제 변동사항 정비

## 2. 주요내용

-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안 제5조 제3호)
-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현행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안 제5조 제7호)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증빙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안제5조 제9호)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신설 안 제5조 제10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961, 팩스 560-27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국토해양부령”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으로,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등급 내지 6등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50%감면(1회주차”를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0%감면”을 “60퍼센트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을 “자가용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 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감면”을 “100퍼센트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50%감면”을 “50퍼센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5조제8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석남제 2주차장, 석남제3주차장, 석남제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 부터 1시간까지 면제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안전관리등”을 “안전관리 등”으로, “사고등을”을 “사고 등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차량등)”를 “차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등”을 “내용 등”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한사유등을”을 “제한사유 등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자(이하”를 “사람(이하”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등”을 “사항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공보”를 “구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다음 각호”를 “다만,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일수”를 “남은일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노외주차장부대시설의 종류등)”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배치

등”을 “배치 등”으로, “당해주차장”을 “해당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3조의 규정을”을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장애인등”을 “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등”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을 각각 “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면”을 “바닥면”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이호”를 “이 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등”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자에게 당해”를 “사람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용자등)”을 “(용자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법」 제4

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다음 각호”를 “사람이 다음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발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국토해양부령”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u>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u></p> <p>②공영주차장관리자는 <u>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u> 및 <u>법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u></p>	<p><u>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주차장법</u>」, <u>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u>-----</p> <p>-----</p> <p>-----</p> <p>-----</p> <p>-----</p> <p>-----</p> <p>-----</p> <p>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u>주차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u> -----</p> <p>-----</p> <p>-----</p> <p>② -----</p> <p>----- <u>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u> -----</p> <p>----- <u>각 호</u> -----</p> <p>----- <u>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u> -----</p> <p>----- <u>100퍼센트</u>-----</p> <p>-----</p>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등급 내지 6등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감면(1회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

③ -----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 안  
니한 사람-----  
-----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  
-----  
-----  
-----  
-----.

1.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  
-----  
-----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  
-----  
-----
2. -----

<p>륜자동차 : <u>60%감면</u></p>	<p>----- <u>60퍼센트 감면</u></p>
<p>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p>	<p>3.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가. <u>10부제 참여차량 : 20% 감면</u></p>	<p><u>가.(삭제)</u></p>
<p>나. <u>요일제(5부제) 참여차량 : 30% 감면</u></p>	<p><u>나.(삭제)</u></p>
<p>다. <u>홀짝제(격일제) 참여차량 : 50% 감면</u></p>	<p><u>다.(삭제)</u></p>
<p>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u>100%감면</u></p>	<p>4. ----- ----- ----- ----- <u>100퍼센트 감면</u></p>
<p>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u>50%감면</u></p>	<p>5. ----- ----- ----- ----- <u>50퍼센트 감면</u></p>
<p>6.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이내 <u>100% 감면</u>(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p>	<p>6. ----- ----- ----- ----- <u>100퍼센트</u> ----- -----</p>

용)

7.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0% 감면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 운전 차량 : 20% 감면

<신 설>

<신 설>

7.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8. -----  
----- 20퍼센트 --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석남제2주차장, 석남제3주차장, 석남제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포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1. ~ 4. (생략)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

면제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  
 -----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안전관리 등-----  
 ----- 사고 등을 -----  
 -----.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  
 ----- 각 호-----  
 -----  
사유 없이 -----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 주차장중에서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자동차외의 자동차 주

----- 차량 등)

② -----

-----

----- 내용 등-----

----- 제1항-----

-----

③-----

----- 해당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해당지역-----

-----

② -----

-----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

-----

③ 제2항에 따라 -----

-----



가·나 이외의 경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	------------------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미만의  
 도로로 한다.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 국토해양부령 제6조  
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 도로에 인근 주민의 자  
 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  
 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  
 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  
 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서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  
 -----  
 -----.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  
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라 주택-----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그 밖에 -----  
 -----  
구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  
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  
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의한 4급지 해  
당요금을 적용한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  
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  
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

③ 제1항에 따른 -----  
-----  
-----  
-----  
-----.

④ 제1항에 따른 -----  
-----  
-----  
-----  
-----.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방법) ①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다  
음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그 밖에 -----  
-----

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 1. (생략)
- 2. 월정기주차권 :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제14조(노외주차장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  
-----.

- 1. (현행과 같음)
- 2. ----- 남은일수  
-----

제14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  
-----  
----- 국토교통부령 -----  
-----  
-----  
-----.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배치 등-----  
-----  
----- 해당 주차장-----  
-----  
-----.

② -----  
-----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 -----.

③ -----  
-----  
----- 해당 -----  
-----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의2(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들의 전용주차장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

②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장 다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장애인 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  
-----  
-----  
-----  
-----.

② 장애인 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등-----  
-----  
-----.

1. (현행과 같음)

2. ----- 바닥면-----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

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와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동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각 호-----  
-----.

1. 해당 -----  
-----  
-----
2. 해당 -----  
-----이 호-----  
----- 해당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  
- 본문에 따라 -----  
-----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의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 내-----  
-----.

4. -----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해당 -----  
-----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  
-----.

②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  
----- 사람에게 해당 -----  
-----  
-----  
-----  
-----  
-----  
-----

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  
 ----- 해당 -----  
 -----  
 -----  
 -----  
 -----  
 -----.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 -----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용자등) ①·② (생략)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3. (생략)
-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용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 각 호-----.

- 1. ----- 사람이 -----
- 2.·3. (현행과 같음)
- 4. -----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 사람은 -----

② ----- 그 밖에 ----- 따른다.

③ (생략)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삭제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 사람이 다음 각호-----  
----- 지체 없이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③ ----- 각 호-----  
사람이 -----  
-----  
-----  
-----.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삭제

② -----  
-----  
-----  
-----  
-----  
----- 발  
급일-----.

<p>③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u>아니한 자</u>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u>발부</u>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다.</p> <p>④영 제17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3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u>를 준용한다.</p>	<p>③ ----- -----<u>아니한 사람</u>----- ----- ----- -----<u>발급</u>----- ----- -----.</p> <p>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 ----- ----- -----.</p> <p>제23조의2(준용) ----- ----- ----- 「<u>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u>」-----.</p>
---	---